장수군
JANGSU COUNTY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520호 2023. 11. 1.(수)

조 례

장수군 조례 제2704호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1
장수군 조례 제2705호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장수군 조례 제2706호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장수군 조례 제2707호	장수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20
장수군 조례 제2708호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4
장수군 조례 제2709호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221호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	36
장수군 규칙 제1222호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42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2023-1142호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장수군 공고 제2023-1144호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2
장수군 공고 제2023-1155호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80
장수군 공고 제2023-1168호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6
장수군 공고 제2023-1171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8
장수군 공고 제2023-1174호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02

회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6)

장수군 조례 제2704호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장수군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

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수상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

(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③ 군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

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수상작 결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심사) ① 군수는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

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1. 제정이유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8. 10. 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이에 따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모전 운영 조례의 구성 목적, 정의, 운영범위 (제1조, 제2조, 제3조)

○ 공모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

○ 공모전의 공모 및 응모에 관한 사항 규정 (제5조, 제6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제7조, 제8조)

○ 공모전 심사, 수상작 공개,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장수군 조례 제2705호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 제16조제2항에”로, “보조금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 및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 제16조제2항에 ----------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견학 및 순례사업
<신 설>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신 설>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신 설>	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3. (생 략)	7. (현행 제3호와 같음)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사업 정비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 반영 (제4조)

○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추가 (제4조)

-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 및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

장수군 조례 제2706호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를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장수군수”로, “권한중”을 “권한 중”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7조의8”을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장수군수---------- 권한 중 ----------.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신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각 호----------.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1. 법 제24조----------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3. 법 제37조 ----------
4. 법 제18조 및 영 제43조 내지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	<삭 제>

민등록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할 수 있다.	<삭 제>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일부 조문 정비

장수군 조례 제2707호

장수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2. 장수군의회
3.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우선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선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제조・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2.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장수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시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 및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름

○ 적용대상 기관 (제4조)

- 군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 군의회, 보조사업자 등

○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

-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노력
-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반영 노력 등

○ 업체정보의 제공 (제8조)

○ 포상 (제9조)

장수군 조례 제2708호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장수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기타

② 장수군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장수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융자 및 이율) ① 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체에 융자하며,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융자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
2. 소상공인의 지원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4.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장수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제10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장수군 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상환은 1년거치 후 2년 균분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

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장수군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민생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지역경제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업체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및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대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융자금 상환기한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 상환기한과 이율을 적용받는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 중소기업육

성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행위로 본다.

1. 제정이유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및 재원 (제3조~제5조)

○ 기금의 관리, 융자 및 이율 (제6조, 제7조)

○ 기금의 용도 (제8조)

○ 융자대상업체 공고 및 선정 (제9조~제11조)

○ 추가융자, 중복융자금지 및 상환 (제12조~제14조)

○ 변경사항 통보 및 사후관리, 보고 등 (제15조~제17조)

○ 회계공무원 및 채권확보 (제18조, 제19조)

○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관계규정 준용 등 (제20조, 제21조)

장수군 조례 제2709호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제3조제13호에 따른 군인

별표 2 기호(○) 기호(-)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 소 년

별표 2 기호(○)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 소 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③너울관의 이용료 감면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한다. 1. 100분의 50 감경 가. ~ 타. (생 략) <신 설> 파. (생 략) 2. (생 략) ④ (생 략) [별표 2] **장수한누리전당 이용료 및 사용료** ○ 수 영 장 - 회 원 【단위:원/1인】 	구 분	기간별 입장료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1 년	
일 반	50,000	135,000	255,000	480,000	19세이상
청소년/군인	40,000	108,000	204,000	384,000	13세~19세미만
어 린 이	30,000	80,000	153,000	288,000	6세~13세미만
유 아	20,000	54,000	102,000	192,000	6세미만	 ※ 회원 감액요율 :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 감액 - 일일이용자 【단위:원/1인】 	구 분		입 장 료	비 고
일 반	개 인	2,500	
	단 체	2,000	20인 이상
청소년,군인	개 인	2,000	
	단 체	1,500	
어 린 이	개 인	1,500	
	단 체	1,000	
유 아	개 인	1,000	
	단 체	500		 ○ 헬 스 장 【단위:원 / 1인】 	기 간	1 일	1개월	3개월	6개월	1 년	비 고
금 액	2,000	20,000	54,000	102,000	192,000	수영장회원 무료 | ※ 회원 감액요율 :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 감액	제25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제3조제13호에 따른 군인 하. (현행 파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장수한누리전당 이용료 및 사용료** ○ 수 영 장 - 회 원 【단위:원/1인】 | 구 분	기간별 입장료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1 년	
일 반	50,000	135,000	255,000	480,000	19세이상
청 소 년	40,000	108,000	204,000	384,000	13세~19세미만
어 린 이	30,000	80,000	153,000	288,000	6세~13세미만
유 아	20,000	54,000	102,000	192,000	6세미만	 ※ 회원 감액요율 :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 감액 - 일일이용자 【단위:원/1인】 	구 분		입 장 료	비 고
일 반	개 인	2,500	
	단 체	2,000	20인 이상
청 소 년	개 인	2,000	
	단 체	1,500	
어 린 이	개 인	1,500	
	단 체	1,000	
유 아	개 인	1,000	
	단 체	500		 ○ 헬 스 장 【단위:원 / 1인】 	기 간	1 일	1개월	3개월	6개월	1 년	비 고
금 액	2,000	20,000	54,000	102,000	192,000	수영장회원 무료	 ※ 회원 감액요율 : 3개월 10%, 6개월 15%, 1년 20% 감액

1. 개정이유

○ 장수한누리전당 수영장, 헬스장 및 장계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용료 감면대상에 군인을 추가하여 지역 군인의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해 장수군민의 건강한 문화, 체육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너울관 이용료 감면 적용대상에 군인 신설 (제25조제3항제1호파목)

○ 이용료 감면 적용대상에 군인이 추가되고 감면율이 상향됨에 따라 청소년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던 군인을 별표에서 삭제 (별표 2)

장수군 규칙 제1221호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표창 중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주봉사상) 민주봉사상은 친절 봉사정신과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귀감이 되는 20년 이상 근속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장수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 및 제3조의 표창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은 「장수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은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1회 12월말에 시행하고, 민주봉사상은 1명, 모범공무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표창방법) 표창은 조례 제8조에 의하며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장수군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금 원
지급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12개월간)

20 년 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장수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무원 대상 연말 포상내용을 현행화하고, 1992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민주봉사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표창의 목적, 종류를 정함 (제1조～제3조)

○ 표창 절차, 시기, 인원, 방법, 우대사항 등 (제5조～제7조)

○ 모범공무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11조)

장수군 규칙 제1222호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다.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9조의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2.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3.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에 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자금융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4. 소상공인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5조(심의자료 제출)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업체별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장 및 임원,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부서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대상업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3.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1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대출하며 1개소당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변재 마감일 40일전까지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

변제 마감일 20일전까지는 채무 연기를 신청한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받은 업체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위탁에 따른 협약서

장수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는 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인도하는것을 말한다.
② “융자”라 함은 “을”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상환”이라 함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을”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의 한도 및 형식) ① 대여의 한도는 매 회계연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리기금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융자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대여의 형식은 신용대출로 하고“을”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장수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의 용도로 융자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의 절차) ① “갑”은 대여금액과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여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의 조건) ① 대여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여금리는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연2%의 융자 금리에서 “을”의 위탁수수료 연○%를 차감한 연○%로 한다.
③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대여금의 상환) ① “을”은 대여금의 상환 시 상환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 다만, “을”은 융자 종결일까지 미융자된 대여금을 융자 종결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반납하고, 융자대상 업체로부터 상환기한 도래 전에 회수한 융자금은 매월 말 기준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
② “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대해 연○%의 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 상환기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납입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미융자된 대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 상환원금에 대해 “을”의 매년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대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기관 일반자금 대출 연체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 대여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대여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융자 및 회수) ① “갑”은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갑”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상 업체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대상 업체가 “을”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업체별 통보금액을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업체에 자금을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을”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④ “갑”은 융자받은 업체가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융자받은 업체에게 융자금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채권관리) ① 협약 체결 후 발생하는 채권은 “을”이 채무관계를 진다.
② 융자금에 대한 신규 채권관리업무는 “을”의 채권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채권관리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마지막 자금 회수까지 협약을 유지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상황을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필요한 경우 대여 및 융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수정 또는 해석) 본 협약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계조항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검사) “갑”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상황을 처리하는 출납상황과 관련 장부를 정기 또는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협약서는 협약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갑”, “을”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장 수 군 수 (인)

(을) ○○ 금 융 기 관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

1. 업 체 명 :

2. 공장소재지 : (전화☎ :)
(주사무소)
(법인의 주사무소)

3. 대 표 자 : (법 인 번 호 :)
(생 년 월 일 :)

4. 융자 신청액 :
- 융자연기 신청액 :

5. 자금 용도 :

6. 업체 현황

업 종		주생산품	
공장규모	대지 ㎡(생산시설 ㎡ + 부대시설 ㎡)		
년간생산	생산량: 생산액:	수 출	년간 천불
종 업 원	명(생산직 명 + 사무직 명)		
자 산	백만원(자본 백만원 + 부채 백만원)		
신청유형 (연기신청유형)			

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기 간 :

2. 사 업 개 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4. 생산효과 및 수익성 :

5. 융자금 상환계획 :

6. 기업 운영실태 :

7. 기 타 :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금 상환연기)신청서

사업자 구분	창업6개월미만, 창업6개월경과			
신청인 현황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처
	사업장(예정)주소			전화: H.P:
	개업(예정)일		상시근로자수 (예정)	명
	업 종		아이템명	
	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	은행 만원 (년 월 일)	장애인 여부	
융자신청(연장)액				
상담・컨설팅 희망 사항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 개선 □ 기타 ( )			
담보제공 방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인)			

상기와 같이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융자(융자연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장수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table>
<tr><td rowspan="4">사업장현황</td><td rowspan="3">소유구분</td><td colspan="2">자가</td><td colspan="2">만원</td><td>사업장면적</td><td>평</td></tr>
<tr><td rowspan="2">임차</td><td>전세</td><td colspan="2">만원</td><td>권리금</td><td>만원</td></tr>
<tr><td>월세</td><td colspan="2">만원(보증금: 만원)</td><td>월관리비</td><td>만원</td></tr>
<tr><td>입지구분</td><td colspan="6">□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역주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수지계획</td><td>구 분</td><td colspan="2">신청일 현재 월평균</td><td colspan="2">1년 후 예상 월평균</td></tr>
<tr><td>매출액</td><td colspan="2">만원</td><td colspan="2">만원</td></tr>
<tr><td>지출액</td><td colspan="2">만원</td><td colspan="2">만원</td></tr>
<tr><td>순이익</td><td colspan="2">만원</td><td colspan="2">만원</td></tr>
<tr><td rowspan="2">소요자금</td><td>임차보증금</td><td>시설비</td><td>운전자금</td><td>초기상품구입비</td><td>기타 비용</td></tr>
<tr><td>만원</td><td>만원</td><td>만원</td><td>만원</td><td>만원</td></tr>
<tr><td rowspan="2">자금조달계획</td><td>총 소요자금</td><td>자기자금</td><td>소상공인 정책자금</td><td colspan="2">기타(차입금 등)</td></tr>
<tr><td>만원</td><td>만원</td><td>만원</td><td colspan="2">만원</td></tr>
<tr><td>사업추진계획</td><td colspan="5">○ 판매 및 마케팅계획 :

○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 기타 추진전략 :

※ 지면 부족시 별지사용</td></tr>
</table>

1. 제정이유

○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협약 (제1조, 제2조)

○ 융자대상업체 (제3조)

○ 자금융자신청 및 심의자료 제출 (제4조, 제5조)

○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 제7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융자 조건 (제8조, 제9조)

장수군 공고 제2023-1142호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 지역정보화 → 지능정보화 (전문)

나. 목적 (안 제1조)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라. 지능정보화책임관 (안 제5조)

마.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안 제8조)

바. 웹사이트 운영 및 주민편익 증진 (안 제12조)

3. 관련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4. 예고기간 : 2023. 10. 16. ~ 11. 5.(20일간, 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9. 2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1) 주 소 : 우 55634/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2) 팩스번호 : 063-350-5705

3) 전자우편(이메일) : vet01@korea.kr

라. 의견제출 및 문의 :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063-350-2171)으로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옥외방송앰프와 옥내 유무선 송·수신장치, 원격방송장치 등을 포함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

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웹사이트 운영 및 주민편익 증진) ① 군수는 웹사이트 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전달과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참고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

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6.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7. "웹사이트 품질관리"란 웹사이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품질진단, 개선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웹사이트 품질진단"이란 웹사이트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2.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
3.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
4.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5.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6.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
7.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장수군 공고 제 2023-1144호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인하여 명칭 변경 정비,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등으로
현행「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인하여 명칭 변경 정비 (안 제1조, 제5조 1항 1호, 제9조 3호, 제18조 1항)

나.「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 (안 제5조 1항 1호)

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29(2022.1.21.)호와 관련 민원인 불편개선을위한 개정사항(안 제3조 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7. ~ 11. 5.(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5.(수)까지** 장수군수(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자 성명)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건설교통과장)

2) 팩 스 : 063-350-5719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4) 직접방문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화 063-350-25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9조제3호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도”를 “전북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장 수 군 수

○ 신고번호: 신고 수리 시 장수군청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관련 법령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마. 물가 안정 등 국가, 도 또는 시·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바.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

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

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의 규격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3-1155호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수정) 공고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예비비 항목 신설 삭제(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상위법상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예비비 계상 가능한 경우)

2023년 10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영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및 예비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5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금후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3. 10월중

나. 공포 및 시행 : 2023. 11월중

4. 따로붙임

가.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발췌서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1) 전화 : 063-350-2525

2) 팩스번호 : 063-350-5718

3) 전자우편(이메일) : juhs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3-1168호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명칭 및 일부 용어와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호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제1항’으로 수정 및 내용 개정

나. 제13조의2 제4항 중 ‘그 사건’을 ‘해당 안건’으로 수정

3. 금후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3. 10월중

나. 공포 및 시행 : 2023. 12월중

4. 따로붙임

가.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발췌서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1) 전화 : 063-350-2542

2) 팩스번호 : 063-350-5718

3) 전자우편(이메일) : yihyun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로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사건”을 “해당 안건”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를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는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 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3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8.04.26.조례제1803호)	3."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군수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08.04.26.조례제1803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 략)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	④ ---------- 해당

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안건----------.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04.26. 조례제1803호)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04.26.조례제1803호)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2013. 7. 30., 2015. 2. 3., 2016. 2. 3., 2017. 4. 18., 2020. 12. 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13.>
8. 삭제 <2018. 3. 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 2. 3.>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9. 1. 15.>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19. 1. 15.>

⑧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5. 5. 18., 2018. 6. 12., 2019. 1. 15.>

[전문개정 2014. 5. 21.]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3079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121호
(일부개정) 2018-08-10 조례 제 4565호

제9조(지정) ① 시장·군수가 발굴·개발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장수군 공고 제2023-1171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23.8.22.)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조문 내용이 미반영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위원 중 부위원장을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개정 (안 제4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3항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 조정 (안 제35조, 제63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3. ~ 2023. 11. 12.(20일간)

4. 의견제출

○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재무과)
- 팩 스 : 063-350-57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재산관리팀(☎ 350-2246)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산관리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 중 “중기공유재산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6회”를 “12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3-1174호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수정) 공고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주요내용 변경(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2023년 10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나.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8조)

다.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안 제9조)

라. 관리대장의 비치(안 제11조)

마. 상위법 조문 정비에 따른 용어 및 표현 수정(안 제1조~17조)

3. 금후계획

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 2023. 10월중

나. 공포 및 시행 : 2023. 12월중

4. 따로붙임

가.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관계 법령 발췌서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전화 : 063-350-2538, 팩스 : 063-350-5718, 이메일 : dk12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담당자(☎ 063-350-25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7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

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결 관리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

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

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 ·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 · 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table>
<tr><td rowspan="3">대표자</td><td>상 호(명칭)</td><td colspan="7"></td></tr>
<tr><td>성 명</td><td colspan="7"></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관 리 인</td><td colspan="7">(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4">시설내역</td><td rowspan="3">시 설 내 역</td><td colspan="3">대변기 수</td><td colspan="2">소변기 수</td><td colspan="2">대변기 유형</td></tr>
<tr><td>남자용</td><td>여자용</td><td>장애인용</td><td>성인용</td><td>유아용</td><td>동양식</td><td>서양식</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편 의 시 설</td><td colspan="2">세면시설</td><td colspan="3">에어타올
(페이퍼타올)</td><td colspan="2">환 풍 기</td></tr>
<tr><td colspan="2">대</td><td colspan="3">대</td><td colspan="2">대</td></tr>
<tr><td colspan="2">1회 사용료</td><td colspan="7">원</td></tr>
</table>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인)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